

수도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

The regulations for the public health treatment of the water institution

제정 1992. 12. 15 건 설 부 령 제521호
보건사회부령 제898호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수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 및 급수장치의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위생상의 조치)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 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음용수의 오염을 방지할 것.
2.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.
3. 수도전에 있어서의 음용수의 잔류염소가 항상 0.2밀리그램/리터(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.5밀리그램/리터)이상이 되도록 할 것. 다만, 병원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0.4밀리그램/리터(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.8밀리그램/리터)이상이 되도록 할 것.

제 3 조(저수조)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(이하 “대형건축물등”이라 한다)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소유자등”이라 한다)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위생점검등) ①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에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·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,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,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위생점검의 대행) 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을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련영업중 위생관리용역을 영위하는 자(이하 “위생관리용역업자”라 한다)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 6 조(위생점검의 기록·보관)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위생관리용역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를 청소하거나 위생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 7 조(방청제의 사용제한)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급수장치에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되, 부식의 방지에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저수조설치기준(제3조 관련)

1. 저수조 벽체의 윗부분은 건축물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이상 떨어져야 하며,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.
2.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여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.
3. 각 변의 길이가 100센티미터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100센티미터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할 것.
4.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설치하고, 바닥을 100분의 1이상의 경사로 설치할 것.
5. 1개의 저수조를 2개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이상 설치할 것.
6. 저수조에 물이 일정수준이상 넘거나 일정수준이하로 줄었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,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.
7.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·쓰레기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 띄워서 설치할 것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.
8.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스틸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.

[별표 2]

저수조위생점검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건축물의 명칭	
소유자(관리자)	
설치 장소	
건축물의 용도	공동주택·사무실·상가·학교·공장·병원·여관·기타
위생점검실시일	

조 사 사 항		점 검 기 준	적 부 (○・×)
1	저수조 주위의 상태	청결하며 쓰레기・오물등이 놓여있지 않을 것.	
		저수조 주위에 고인물・용수등이 없을 것.	
2	저수조 본체의 상태	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.	
		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.	
		유출관・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・밀폐되어 있을 것	
3	저수조 윗부분의 상태	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.	
		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.	
4	저수조안의 상태	오물, 붉은녹등의 침식물,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등이 없을 것.	
		수중 및 수면에 이상한 부유물질이 없을 것.	
		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있지 아니할 것.	
5	맨홀의 상태	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.	
		점검을 하는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.	
6	월류관・통기관의 상태	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.	
		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.	
7	냄새	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.	
8	맛	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.	
9	색도	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.	
10	탁도	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.	